



제 39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30호)

2022.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 영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안 제3조)	4
2. 기본계획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포함(안 제6조제2항)	5
3. 청년농어업인 우대 및 고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 (안 제10조제2항 신설)	8
4. 후계농어업인 대상 조세감면 규정 신설, 자금 및 컨설팅 지원 방안 구체화(안 제13조)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4. 13.
3. 회 부 일 : 2022.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231만 7천여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

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다. 제13조(청년농어업 우대)을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와 병합하여 한 조문으로 함(안 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안 제3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u>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u> ----- -----.

현행법 제3조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동법이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후계농·청년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창업 기반 마련, 교육, 위기관리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2. 기본계획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포함(안 제6조제2항)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방안(제2호),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제5호),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제6호),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제7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u>강화</u> 를 위한 교육 방안	2. ----- <u>강화</u> 및 <u>첨단장비 조작 등을</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u>
<u><신 설></u>	6. <u>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u>

<u><신 설></u> 5. (생 략) ③ · ④ (생 략)	<u>한 개선방안</u> 7. <u>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부처는 현재 제1차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7년)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¹⁾

현재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①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②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③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⑤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에 추가되는 사항 중 제2호의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방안’과 제5호의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의 경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경우 후계농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후계농의 농어촌으로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되어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

[표 1]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 사항

현행	개정안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및 <u>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u>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신 설>	5. <u>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u>
<신 설>	6. <u>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u>
<신 설>	7. <u>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이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6호와 같이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써 법률에 명시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동법 제7조2)에서 애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2)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 제7호의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현행 제1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서 농어촌 인구 및 후계농어업인 현황 및 전망이 반영될 예정이며, 현행 제3호에서 후계농어업인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3. 청년농어업인 우대 및 고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안 제10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의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조항과 현행법 제13조의 청년농어업인 우대조항을 통합하여 제10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청년농어업인 <u>고용에 대한 지원</u>) (생략)	제10조(청년농어업인 <u>고용 지원 및 우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현행법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³⁾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두 조항 모두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의 농업법인 취업·육성시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4. 후계농어업인 대상 조세감면 규정 신설, 자금 및 컨설팅 지원 방안 구체화(안 제13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항),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제2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생략)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영농상속공제⁵⁾,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⁶⁾ 등 후계농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 제1항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지 등 농업 기반의 이전에 있어 세제 지원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법 및 조세 관련 법률 등으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⁷⁾ 개정안과 같은 개별법상 조세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하략>

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하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원이 가능하고, 개정안과 같은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조세지원이 불가능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므로⁸⁾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선언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는 개정안의 조세지원 조항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2항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금·컨설팅 지원 방안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 등 농업 경영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